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규정집 규정

[2024년 2월 28일 개정]

목 차

01.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규약	1
02. 가맹단체 운영 규정	17
03. 가맹 및 탈퇴 규정	31
04. 관리단체 운영 규정	39
05. 지회 운영 규정	45
06.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53
07. 상벌위원회 운영 규정	59
08. 생활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67
09. 전문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73
10. 학교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79
11. 선수위원회 운영 규정	83
12. 위원회 등 실비변상 규정	89
13. 체육유공자 포상금 지급 규정	93
14. 우수선수 훈련비 지급 규정	99

15. 대회개최 · 참가 보조금 지원 규정	109
16. 인사 규정	119
17. 복무 규정	143
18. 보수 규정	169
19. 회계 규정	197
20. 물품관리 규정	217
21. 여비 규정	237
22. 문서관리 규정	245
23.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255
24.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293
25. 차량운영 관리 규정	327
26. 실업팀 운영 규정	347
27. 기부금품 관리 규정	365

선수위원회 운영 규정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선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22. 12. 13.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28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선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선수의 권익을 보호,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페어 플레이 정신 함양을 통해 존경받는 체육인상을 확립함으로써 스포츠정신의 보급·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종목별 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에 등록된 선수에 적용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각종 대회 관련,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장애인스포츠 정신의 보급·확산
2. 장애인스포츠기구 선수위원회의 교류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선수의 권익 보호, 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선수등록 및 경기분야 제도개선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5. 선수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은퇴선수 프로그램 개발 등 은퇴선수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
8. 위 각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② 위원은 정기등록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위원 선임년도 기준 2년 연속 선수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체육회 직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경기단체에서 선출된 자로 장애인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② 위원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경기단체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위원으로 선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으로 선임된 기간 동안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 해당종목에서 직위를 잃었을 경우

제10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장애인체육회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위원회를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2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선수위원회 설치 의무) ① 장애인체육회는 선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회의 선수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선수 자질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국 설치) ① 장애인선수 및 은퇴선수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